

서울특별시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5년”을 “5년(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
 -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
 -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0조의 제목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에서”를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서”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건축허가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설 현대화 및 시장활성화 촉진을 위한”을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로 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자
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건축허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동조제2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취득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시 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서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u></p>	<p><u>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시 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서 및 공동 시설세를 면제한다.</u> <u>2. 임대주택법시 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u>

현 행	개 정 안
<p><u>②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u></p>	<p>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p> <p>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u>③임대사업자가 임대 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다. <p>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현 행	개 정 안
<u>또는 사업계획승인일</u>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u>시장개발·건축</u> <u>사업 시행</u> 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 득하는 자 <u>시장정비사업</u> <u>시행</u> <u>으로</u>
3. <u>시장개발·건축사업</u> <u>시행계획인가</u> <u>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u> 현재 기존 시 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서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3. <u>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건축허가일</u>
② <u>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지례시장활성화를</u> <u>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u> 규정에 의하여 시 장시설 현대화 및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 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 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한다.	② <u>지례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u> <u>의하여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u>